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
----------	----

2018년 9월 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가. 제안이유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안 제4조)

-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
(안 제4조, 제8조)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안 제8조제2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8. 5. 24 ~ 6. 14)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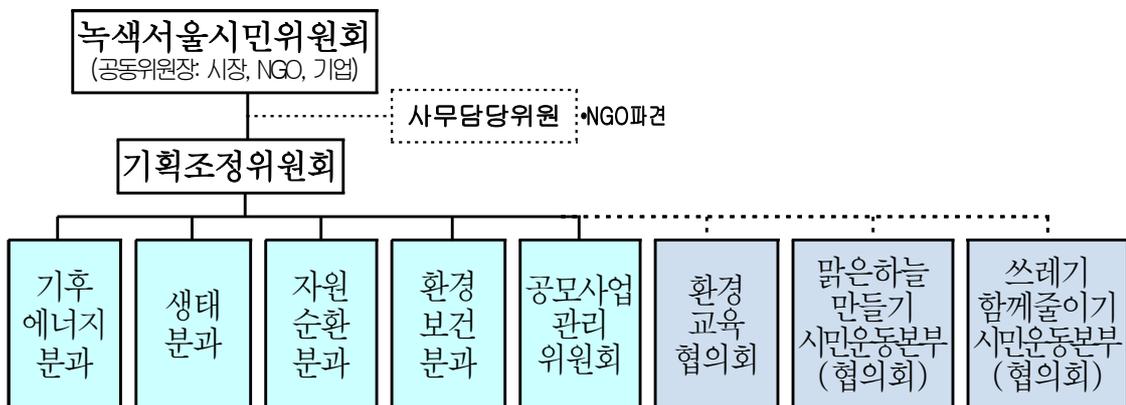
- 본 조례안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현황

- 현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위원회 구성은 3명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공모사업 관리위원회, 환경교육협의회 등 3개 협의회로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되어 있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현황>

2)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및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관련(안 제4조, 제8조)

- 현행 조례 제2조제6호는 위원회 기능 중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및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교육은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8조2(기타 협의회의 설치)를 준용하여 ‘환경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분과위원회는 당초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11.3.17~13.7.31), 2013년 동 조례 개정으로 환경교육분과위원회가 삭제되고 현행과 같은 4개 분과위원회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와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환경교육협의회’를 대체하여 별도의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조례에 규정·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위원 수 증가는 없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현 행	개 정	비 고
<input type="checkbox"/>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생태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환경보건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분과협의회 (폐지)	<input type="checkbox"/>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생태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환경보건분과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환경교육협의회를 분과위원회 체계로 대체하고 조례에 규정

- 분과위원회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주요 예>

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조정 사항
기후·에너지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추가
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
자원순환	자원순환문화 확산,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추가
환경보건	대기질 개선 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삭제하고(기후에너지 분과위로 기능 조정), 석면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추가

3)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관련 (안 제4조)

- 현행 조례 제4조는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 이후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은 연말 정기회에서 위원회 활동사항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을 단순 보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음.
- 실제 동 위원회가 주요 기능인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외에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 예산집행 및 정산은 기후환경 본부 내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위원은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의결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다른 위원회(장애인 복지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조례에서도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동 위원회 내 감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유사 위원회의 경우도 감사를 선임한 사례가 없으며, 일반적인 예산집행과 위원회 활동 평가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안 제4조와 같이 감사 선임 규정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타 조문 정비 관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내용 중 다른 조례의 제명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주요 예>

현 행	개 정
자	사람
긴급을 요하는	긴급한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기타	그 밖에
~ 내지 ~	~ 부터 ~ 까지
~ 아니한다	~ 아니하다
~ 범위 안에서	~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인을 포함하여 100인”을 “3명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명과 감사 2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사무담당위원”을 “사무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계획수립”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후변화·에너지”를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로,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을 “환경관련”으로, “행사 추진”을 “행사 추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를 “자연환경보전 실천 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관련”을 “등에 관한”으로, “정책개발”을 “정책 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이용·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을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녹색구매”를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제8조제2항제5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제8조제3항 중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과위원회내”를 “소관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기타 협의회의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을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을 “10일 전까지 사무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제22조 규정에 의거”를 “제22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을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위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 중 “기타 이 조례시행”을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으로, “시장이 따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u>」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 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u>」 제26조에 따라 ----- ----- ----- ----- ----- ----- -----.</p>
<p>제2조(기능) <u>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2. 삭 제</p> <p>3. ~ 6. (생 략)</p> <p>7. 「<u>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u>」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p> <p>8. ~ 10. (생 략)</p>	<p>제2조(기능) <u>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는 ----- -----.</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u>」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p> <p>8. ~ 10.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생 략)</p> <p>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p>	<p>제3조(구성) ① ----- 3명 을 포함하여 100명 ----- ----- ----- 사람이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사람 ----- ----- 사람</p>

② (생략)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명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4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략)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

----- 사람 ----- . -----
----- 사람은 -----
----- 사람 -----
----- 사람 -----
----- .

② ----- 5명 -----

----- .

③ -----

-----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른 -----
----- .

<삭제>

제5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생략)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중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생략)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④ (생략)

제6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

제5조(기획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
----- 사람 -----
----- 사람 -----
----- 사무담당 위원 -----

-----.

③ -----
-----.

1. ----- 사업계획 수립 -----

2. (현행과 같음)
3. ----- 긴급한 -----
4. 제8조의2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고문) -----

-----위원 중-----
-----.

제8조(분과위원회) ① -----

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2. 생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재이용·재사용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신 설>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

② -----
-----.

1. -----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
----- 환경관련 -----

----- 행사 추진 등
2.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 등에 관한 -----
----- 정책 개발 -----
3. -----

-----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 공감대 형성-----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

4.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대기질 개선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악취·소음·방사능 등,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교육 등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생략)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2 (기타 협의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협의회의 위원은 환경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③ -----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소관 분과위원회 -----

-----.

제8조의2(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3. (생략)
- ⑤ (생략)

제10조(회의) ① ~ ② (생략)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 2. (생략)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그 밖에 -----
-----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

- 2.·3.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④ -----
- 분과위원회 위원 --- 1 이상-----

-----.

제12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회는 회의개최 예정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안의 처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

----- 10일 전까지
사무담당 위원-----.

----- 아니한다.

제13조(의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

-----.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

----- 1명-----.
② ----- 시 -----

-----.

제15조(사업계획서 제출) -----
----- 시 -----

-----.

제23조(재정지원) ① -----

----- 범위-----

-----.

② 시장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① 시장은 제5조·제10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 위원과 기업·시민단체의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제21조에 따른 -----

----- 범위 -----
-----.

제24조(수당) ① -----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

-- 제22조에 따라 -----
-- 사람 ----- 범위 --
-----.

----- 아니하다.

② -----
-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 위원 -----

----- 범위 -----
-----.

제2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 규칙 -----
-----.